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5781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발 의 자 : 안경은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가. 통합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대구는 K-2 후적지를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동시에 주변을 연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경북은 인구유입과 새로운 공항복합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역사의 사업이기도 함.

- 나. '16년 7월 이래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도 '16년 9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와 '18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계각층 관계자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다. 2018년 3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가 2곳이 선정되고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0년 8월 28일 공동후보자(군위 소보·의성비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공항 건설과정에서 노정될 수도 있는 관련 자치단체간 이견을 원만하게 조정·중재하는 것은 물론,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 라. 따라서, 제8대 후반기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20. 9. 18 ~ 2022. 6. 30 (약 21개월)
 - 위 원 수 : 7명 이내
- 나. 관련법규 : [붙임]

[붙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